

# ˈLG생활건강 인권정책

제 정: 21년 3월 개 정: 23년 5월

## 목적 및 적용

LG생활건강은 LG그룹의경영이념인 '인간존중의경영'을실천하기위해 임직원, 고객, 협력회사, 합작회사, 관계사, 고객, 지역사회 등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인권정책을 수립하여 사업활동 전반에 포괄적으로 실행한다. 각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사회,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직원의 고용 안정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며, 기업시민으로서 UN인권위원회의 '세계인권선언'및 '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본지침'이제시하고 있는 인권이행원칙을 지지한다.

## 인권원칙



- 인종,나이,성별,국적,장애,종교,임신,노조가입여부,결혼여부,사회적신분, 성적지향등의이유로채용,임금·보상,승진등을차별하지않도록한다.
- 특히 심각한 차별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.



 모든 근로자를 인간으로 존중하며,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, 체벌,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강압, 폭언,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 대우가 없도록 한다.



- 폭행, 협박, 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개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.
-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,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나 여권, 근로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.



### 여성과 아동 노동

- 어떠한 직무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.
- 또한, 연소근로자와 임산부는 위험한 작업에서 배제한다.
- ILO(국제노동기구)의 국가별로 비준된 협약에 따라 노동 연령 제한 등의 근로조건을 준수한다.
- '아동'은 일정한 최소 연령에 미달하는 자를 의미하며, 이러한 최소 근로 연령은 각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 따라 결정된다.

# 근로 시간

• 각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지정한정규, 초과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.

#### 임금과 복리후생

-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최저 임금, 초과 근로시간, 법정복리후생 등이 포함된다.
- 또한, 자사 사업장 및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(관계사, 협력회사 등)는 법령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나아가,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.

# 결사의 자유

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련 법규에 따라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
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, 근로자가 차별이나 보복, 협박,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

### 개인정보의 보호

-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는 그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,
  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.
- 또한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,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.



# 인권경영

1 인권 경영 체계

LG생활건강은 국내외 사업장, 협력회사, 합작회사(Joint Venture), 관계사, 고객, 지역사회 등 비즈니스파트너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서의 인권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이행할 수 있다. 이를 통해 인권 취약 이슈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.

확인된이슈는전담부서가집중관리하여완화계획을수립하며,개선및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한다. LG생활건강은발견된이슈와완화계획에대하여ESG협의회에보고하며,

중요인권이슈는 ESG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2 인권영향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

#### 식별&평가 소통 완화조치 이행&결과 • 인권위험과영향확인자료조사 • 인권영향평가결과분석 완화행동계획이행및결과확인 • 결과보고 • 주요인권위험및영향검증을 •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사업장 위한 이해관계자참여 대상완화행동계획수립 • 행동계획이행여부에대한 • 평가절차검토및개선 결과반영 • 인권위험과영향사전평가 • 주요협력회사대상완화행동 계획권고 • 주요사업장실사평가

③ 내·외부 이해관계자 소통

LG생활건강은 인권경영을 위한 정책을 대외에 공개한다.

내·외부이해관계자와적극적소통하며, 잠재적인권이슈를모니터링한다.

또한 임직원의 인권 존중을 실현하고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직원 인권 교육을 이행한다.

4 인권 고충처리

임직원과 협력회사, 파트너사 등은 당사와 관련한 인권 고충 발생 시 언제든지 고충처리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.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.

인권 고충처리 채널

조직문화 02-6924-6267 정도경영 02-6924-6780 부문 culture@lghnh.com 부문 justice@lghnh.com